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80 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김영환・민형배・이정문

박용갑ㆍ서미화ㆍ전현희

정일영 · 김현정 · 임광현

이병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, 외환, 반란,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퇴직한 군인은 내란, 외환, 반란,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. 최근 12·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했음. 현역 군인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.

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.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(안 제38조제4항 등).

법률 제 호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 중 "제3항까지의 규정에"를 "제3항까지에"로 한다.

제25조제5항 중 "제3항까지의 규정에"를 "제3항까지에"로 한다.

제26조제4항 중 "제3항까지의 규정에"를 "제3항까지에"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"제5호까지의 규정에"를 "제5호까지에"로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"제4항까지의 규정을"을 "제4항까지를"로 한다.

제38조제4항 중 "복무 중의 사유로"를 "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분할연금 수급권자 등) ①	제22조(분할연금 수급권자 등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④ <u>제3항까지에</u>
<u>정에</u>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, 혼	
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	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한다.	
제25조(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)	제25조(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부터 <u>제3항까지의 규</u>	⑤
<u>정에</u>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	
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	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
정한다.	.
제26조(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	제26조(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
할) ① ~ ③ (생 략)	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④ <u>제3항까지에</u>
<u>정에</u>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	
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27조(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)	제27조(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3호부터 <u>제5호까지</u>	②제5호까지

- <u>의 규정에</u> 해당하는 기관은 <u>에</u>--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제2항 ----에 따라 지정·고시하는 기관 ----으로 한다. ----
- ③ ~ ⑤ (생 략)
- 제35조(퇴직유족일시금) ① (생략)
 -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
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<u>제4</u>
 <u>항까지의 규정을</u> 준용한다.
 - ③ (생략)
- 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) ① ~ ③ (생 략)
 - ④ 복무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·제2장 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 제1장(반란의 죄)·제2장[이적 (利敵)의 죄], 「국가보안법」 (제10조는 제외한다), 「군사기밀보호법」(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)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,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

_
<u>,</u>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5조(퇴직유족일시금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<u>제4</u>
<u>항까지를</u> .
③ (현행과 같음)
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
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
٥]

다. --.